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0월 17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92개의 일몰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내용은 106개이며, 총 감면 규모는 1조 2,669억원임.

정부안은 이 중 60개의 일몰기한을 단순 연장하고 있으며, 16개는 일몰 종료, 26개는 특례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11개의 지방세 특례를 신설 또는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에 따르면 향후 연간 1조 1,696억원의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개인의 취득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주택건설·공급 사업 주체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의 적정성, 특례 도입 이후 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여 고령화·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를 유보하는 요인에는 세 부담 외에 철거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 주민을 채용할 유인을 제공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공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 외의 정책적 접근이 병행될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농촌의 현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몰연장이 필요함(위성곤위원).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